#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56

발의연월일: 2020. 12. 28.

발 의 자:고영인·이상헌·김회재

양경숙 • 김홍걸 • 윤관석

윤미향 • 주철현 • 이성만

황운하 • 이수진 • 이은주

송영길 • 박성준 • 김승원

서영교 의원(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 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신청 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 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급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의 변동, 지급한 비용의 일부 상계 ·환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미미한 소득·재산액의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수급자격이 중지·변동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자의 안정적 보호 및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가.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외에 전국의 다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 나.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의 변동이 소득·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법률 제 호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 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소득·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아니하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장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 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 지)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 ス])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후단 -----. 다만. 제 3호의 경우 <u>소득·재산 상태 등</u> 신설> 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 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